##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933

발의연월일: 2022. 12. 14.

발 의 자 : 홍정민 · 강선우 · 김민석

김병욱 • 민형배 • 박완주

소병훈 · 송옥주 · 이상헌

한준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그 파급력과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과태료의 부과는 긴급응급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부족하고,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가공 •편집·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응급조치 처벌 경고에 서 스토킹행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요건을 삭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3조, 제20조 및 제21조).

#### 법률 제 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정보통신망을"을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가공·편집·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3조제1호 중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을 "처벌"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잠정조치"를 "잠정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	1
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	
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	
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	<u>정보통신망(이하</u>
건이나 글・말・부호・음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향・그림・영상・화상(이	
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마. (생 략) <u><신 설></u>

2. ~ 4. (생략)

-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 1. 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 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 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 4. (생략)

제20조(<u>잠정조치</u>의 불이행죄) (생략)

<신 설>

- 2. ~ 4. (현행과 같음)
  제20조(<u>잠정조치 등</u>의 불이행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 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 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제21조(과태료) <삭 제>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 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u>아니하거나</u>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 부과 · 징수한다.

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2)	(현행과	같음)
$\overline{}$	\ \( \( \)	

3	제2형	<u>}</u>	 	